

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 설명서



■ 계좌개요

개요	▶ 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」 및 시행령「제93의 14」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제도를 신설
투자대상	▶ 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」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("국민성장펀드")요건을 충족하는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
가입대상	▶ 19세 이상 개인 거주자 ▶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~19세 미만인 개인 거주자 (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 ▶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해당 시 가입 불가
서민형 요건	▶ 서민형의 가입조건은 총급여 5,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입니다. (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것) ※ 세제혜택의 차이는 없으나 펀드 모집청약시 우선순위로 배정 가능
필요서류	▶ 기본서류 : 소득확인증명서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 ▶ 15세 이상~19세 미만 추가서류 : 소득금액증명원 단,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제출
가입한도	▶ 총 2억원 (※ 연간 최대가입한도 1억원, 한도 내 복수 계좌 개설가능) ▶ 전용계좌 최소가입금액은 1백만원 입니다.
계약일	▶ 최초 매수결제일 가입기한까지 국민성장펀드 매수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하며, 최초매수결제일부터 계약일로 계산 합니다.
만기일	▶ 최초 매수결제일로부터 5년
의무보유기간	▶ 최초 매수결제일로부터 3년
가입기한	▶ 2030년 12월 31일

■ 세제혜택 및 해지

세제혜택기한	▶ 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 및 펀드 최초설정일 매수결제금액 (모집청약 포함)만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. (단, 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3년 이내 계좌 해지 시 추징세액 발생)										
분리과세	▶ 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계좌로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9.9% 분리과세 적용됩니다. (지방소득세는 포함하며,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.)										
소득공제	▶ 국민성장펀드 모집청약 금액에 대해 매수금액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※ 거래소를 통해 동일 국민성장펀드의 상장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미적용 됩니다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모집청약 금액</th><th>공제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천만원 이하</td><td>투자금액의 40%</td></tr> <tr> <td>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</td><td>1,200만원 + 3천만원 초과분의 20%</td>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</td><td>1,600만원 + 5천만원 초과분의 10%</td></tr> <tr> <td>7천만원 초과</td><td>1,800만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 소득공제 종합한도 (연 2,500만원) 적용 각종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2,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 「조특법 제132조의2」	모집청약 금액	공제액	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40%	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1,200만원 + 3천만원 초과분의 20%	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5천만원 초과분의 10%	7천만원 초과	1,800만원
모집청약 금액	공제액										
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40%										
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1,200만원 + 3천만원 초과분의 20%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5천만원 초과분의 10%										
7천만원 초과	1,800만원										

case 1_최초 모집청약시 펀드 매수금액만 보유한 경우

계약일 펀드최초매수결제일 (최초발행분)		의무보유기간 (최초매수결제일 +3년)	만기일 (최초매수결제일 +5년)	과세혜택 대상 매입금액	
2026-06-20		2029-06-20	2031-06-20	소득공제	500만원
펀드청약 500만원				분리과세	500만원

※ 최초발행 모집청약한 펀드 매수금액 500만원은 소득공제혜택과 만기일(최초매수결제일+5년)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됩니다.

case 2_ 최초 모집청약시 펀드매수 & 동일펀드가 상장된 후 상장수익증권으로 추가매수한 경우

계약일 펀드최초매수결제일 (최초발행분)	동일종목 상장수익증권 매수결제일	의무보유기간 (최초매수결제일 +3년)	만기일 (최초매수결제일 +5년)	과세혜택 대상 매입금액	
2026-06-20	2027-03-05	2029-06-20	2031-06-20	소득공제	500만원
펀드청약 500만원	상장수익증권 매수 300만원			분리과세	800만원

↳ 계약일에 영향을 주지 않음

※ 최초발행 모집청약한 펀드 매수금액 500만원은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되고 동일펀드가 상장된 후 동일펀드의 상장수익증권을 추가매수한 300만원은 소득공제혜택은 불가하며 만기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.

case 3_최초 모집청약시 펀드매수 없이 국민성장상장수익증권만 매수한 경우

계약일 상장수익증권 최초매수결제일		의무보유기간 (최초매수결제일 +3년)	만기일 (최초매수결제일 +5년)	과세혜택 대상 매입금액	
2027-06-20		2030-06-20	2032-06-20	소득공제	해당사항없음
국민성장 상장수익증권 500만원				분리과세	500만원

※ 최초발행시 펀드매수금액은 없으므로 소득공제혜택은 불가하고 상장수익증권을 매수한 매입금액 500만원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만 혜택적용됩니다.

중도해지

- ▶ **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3년(의무보유기간)이 되는 날 전에 매도하거나 계좌 해지를 하는 경우 적용받은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됩니다.**
(분리과세) 9.9% 분리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% 일반과세로 재징수 됩니다. (지방소득세 미포함)
(소득공제) 공제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해지시점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평가금액에 대해 14%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. (지방소득세 미포함)
- ▶ 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국민성장펀드를 상장수익증권으로 전환 시 계좌 해지가 필요하며 적용받은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됩니다.
- ▶ 중도해지 시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. (일부해지 불가)
- ▶ 해지 시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계좌에 세금 미수금이 발생되어 추가입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▶ 해지 시 계좌 내 보유상품은 자동매도되지 않고 현물 보유상태로 해지되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만기해지

- ▶ 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세액추징없이 만기해지 가능합니다.
- ▶ 해지 시 계좌 내 보유상품은 자동매도되지 않으며, 현물 보유상태로 해지 가능합니다.

특별중도해지

- ▶ 부득이한 사유(특별해지 사유)로 최초매수결제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계좌 해지 시 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.
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시 특별중도해지 가능합니다
사유 발생일로 부터 6 개월 이내 특별해지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
- ④ 가입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
- ⑤ 법 제93조의 28 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인가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부적격통보	▶ 가입 후 국세청으로 부터 부적격대상으로 통보되면 계약은 해지되며 별도로 안내드립니다. ▶ 납입 후 분리과세 및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해지추징세가 발생합니다. ▶ 해지 시 계좌 내 보유상품은 자동매도되지 않고 현물 보유상태로 해지되며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------	---

■계좌특성

입출금	▶ 전용계좌 개설 시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입출금 가능합니다. ▶ 계좌에서 출금 시 계좌에 입금한 투자원금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출금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생성됩니다. ▶ 지급받은 배당소득 또는 예탁금이용료 인출 시에도 납입한도가 생성됩니다.
상장수익증권 전환	▶ 공모 폐쇄형으로 모집청약 된 국민성장펀드는 증권거래소 상장 후 상장수익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▶ * 상장: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가 설정된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종목이 등록됩니다. ▶ 폐쇄형 펀드의 경우는 펀드의 만기일 전에는 매도가 불가하여 매도를 원하시는 경우 상장수익증권으로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. ▶ 단, 상장수익증권 전환 시 계약 해지가 필요하며 의무보유기간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시 추징세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	▶ 해당 전용계좌는 펀드판매사 이동이 불가합니다. ▶ 1개의 계좌에 1개의 국민성장펀드만 매수 가능합니다. ▶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▶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투자가능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,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▶ 국민성장펀드를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, 보수 등에 관한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, 투자성향, 투자목적,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 후 신중히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▶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당사의 여타 보호금융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▶ 일반형과 서민형은 유형 전환은 불가하며 계좌개설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. ▶ 투자에 대한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▣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합니다.
- ▣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관리점 및 고객센터(☎1588-6800)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(작성기준일자 2026.05.22)